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6. 4.(일) 11:00 < 6. 5.(월) 조간 > 배포 2023. 6. 2.(금)

휠체어그네 안전기준 마련된다

- 휠체어그네 관련 안전기준(안) 재행정예고(6.2~6.23) -
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진종욱)은 6월 2일(금) 「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(이하 고시)」 개정안에 대해 재행정예고(6.2~6.23)하였다. 이번 고시 개정안은 장애 어린이가 휠체어 또는 유모차를 타고 그네에 탑승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구이용형 그네(이하 휠체어그네)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 비장애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 행정예고('22.6~8월)했던 안전기준(안)이 보완되었다.

* 안전기준 개정 진행 현황 : 안전기준 연구용역('21.4~'22.3), 공청회('22.6), 행정예고('22.6~'22.8), 이해관계자 간담회('22.9), 규제개혁위원회('23.3), 제품안전심의위원회('23.5)

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휠체어그네를 이용하는 장애 어린이의 안전 확보와 함께, 비장애 어린이의 오용 사고 방지를 위해 그네 미사용 시 비장애 어린이가 이용하지 않도록 고정하며, 그네 하단과 지면 사이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일정 간격(230㎜)을 확보하도록 했다. 휠체어그네 모서리에 충격흡수 물질을 추가하고, 주의경고표시도 강화한다(붙임 참고).

이번 고시 개정안은 수요자 발주, 업체 제작과 인증 준비 등에 차질이 없도록 '23.7월에 확정·고시한다. 아울러, 행정안전부는 안전인증을 받은 휠체어그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안전기준(안)을 반영하여 「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」 개정을 진행 중이며, '23.10월 안전기준과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.

* 어린이놀이기구 관리체계 : (산업부 국표원) 놀이기구 안전기준 및 인증
(행안부)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관리

고시 개정안에 대한 상세사항은 '산업통상자원부(www.motie.go.kr) > 예산·법령 > 행정예고'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담당 부서	제품안전정책국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	책임자	과 장	오재철	(043-870-5450)
		담당자	사무관	조영삼	(043-870-5574)
담당 부서	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	책임자	과 장	허승범	(044-205-4210)
		담당자	주무관	김찬미	(044-205-4216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**기구이용형그네(휠체어그네) 안전기준(안) 주요내용**

□ 주요내용

구 분	세 부 사 항
적용범위	- 신체 기능 및 구조, 활동에 제약이 있는 어린이가 휠체어·유모차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탑승이 가능한 그네 - 보호자의 충분한 감시.감독이 있다는 전제 조건 필요 (휠체어·유모차를 기구에 고정하기 위해서도 별도 보호자 필요, 휠체어에 탑승한 1인 단독 사용 불가)
안전요건 · 표시사항	- 일반적인 유해물질 안전요건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준용 - 재료(목재, 금속, 합성수지) 안전기준 - 동적 하중 시험방법 및 기준 - 사용자 스테이션에 휠체어·유모차 고정을 위한 장치 - 사용자 스테이션과 지지구조물 간 이차적 지지수단 마련 - 휠체어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이용에 관한 설명 표시 < **비장애 어린이 사고 방지 관련 안전기준(안)** > - (**비장애 어린이 사용 방지**) 미 사용시 어린이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 고정장치 설치 규정 - (**끼임사고 방지**) 사용자 스테이션 하부와 지면과의 최소 간격(230mm) - (**충돌 시 신체 충격 완화**) 사용 중 외부 충돌에 대한 보호를 위한 충격흡수물질 설치 규정 - (**주의경고표시 강화**) 비장애 어린이의 사용 금지 표시 추가 ("비장애 어린이는 사고 위험이 있으니 절대 사용하지 말것")